

(앞쪽)

병역증		
성명	생년월일	
주소		
병역판정검사 년월일	신체등급	병역처분
「병역법」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병역처분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		
○○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 (직인)		
유의사항		
1. 이 증은 전시·사번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.		
2. 이 증을 주우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		

87mm×56mm[전산용지 150g/㎡]



(뒤쪽)

병역처분 변경			
연월일	처분내용	근거	확인관